

보험금을 사정하는 면허취득자

趙 哲 佑
(업무부 과장)



손해사정 업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사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이다.

즉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통지에 의하여 첫째 보험증권이 손해발생 시점에서 유효한지 여부, 둘째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피보험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셋째 손해를 입은 물건이 보험의 목적물에 부합되는지 여부, 넷째 보험금 청구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검정과 사정업무를 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해사정인의 필요성 및 제도의 시행

손해보험사업은 각종 기술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끔 고도의 전문지식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의 기능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사정 업무, 즉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사정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손해사정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유자격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처리하거나 선임 위탁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손해사정인은 개인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고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데 다만 법인으로 하고자 할때는 그 업무 종별에 따라

해당 손해사정인 2인 이상을 고용한 후가 아니면 당해 종별 손해사정 업무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가 손해사정인의 법정수가 미달되어 아직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으나 정책당국은 이의 해소를 위하여 1982년도 재무부 “손해보험사업 경영 효율화 지침”에 손해사정인제도 조기정착화 및 손해사정인 우대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 시켰고 1984년 시험 실시후 현재 법정인원수는 충족되었으나 실제 실무에 임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수 부족하여 1985년도에 전반적으로 실시키는 곤란하나 일부 부분적으로라도 본제도가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각 손해보험회사는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지급, 진급의 우선권, 해외연수 우선권등을 부여하여 사정인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손해사정인의 업무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 자로 그 구체적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재발생의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적용의 적정성 여부, 손해액결정, 사고원인규명, 사고수습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지시 또는 권고와 이들의 기록을 행하는 일, 즉 검정업무와 보험계약내용 및 이재조사 등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계산 확정하여주는 업무를 말한다.

손해사정인은 그가 내린 평가(assessments), 판정(judgements), 결정(decisions) 등에 대하여서는 법관이 문제를 해결하듯이 절대 공정하여야 한다. 즉 손해사정인은 「중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하며, 보험계약 관계자들의 책임한계를 조정하여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손해사정인의 현황 및 육성방안

1978년도 제1회 손해사정인 자격시험 실시이후 1984

년 제7회 손해사정인 자격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손해사정인은 총 13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업종별로 분류하여 보면 1종(화재보험, 특종보험) 75명, 2종(해상보험) 20명, 3종(자동차보험) 39명이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2차시험 합격 후 시보증인자는 총 177명으로 이를 업종별로 보면 1종 29명, 2종 17명, 3종 131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당협회는 1종 손해사정인 1명과 1종 손해사정인 2차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증인 4명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거의 「커리큘럼」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인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형편상 보험회사 종사자들밖에 없으므로 일부 제한된 감이 없지 않으나 손해사정인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본시험에 응시하여 많은 손해사정인을 배출하여야 하겠다.

전문손해사정인의 많은 확보를 위하여 각 보험회사는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와 이의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과감하게 하고 정책당국은 본제도시행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정인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손해사정인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 목	제 1차시험	제 2차시험
1종 화재보험 특종보험	1. 보험업법 2. 화재, 특종보험이론 3. 회계학 4. 영 어 5. 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1.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 화재, 특종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2종 해상보험 (항공, 운송 보험포함)	1. 보험업법 2. 해상보험이론 3. 회계학 4. 영 어 5. 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및 해상편)	1.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 해상보험의 손해 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3종 자동차보험	1. 보험업법 2. 자동차보험이론 3. 회계학 3. 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1.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 자동차 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